

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자격증박탈처분의 신청)”을 “(자격증취소처분의 신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”을 “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6조에 따른”으로, “박탈처분”을 “취소처분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자격증박탈처분의 통지)”를 “(자격증취소처분의 통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박탈처분”을 “취소처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 2

신·구조문 대비표 (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)

현행	개정안
제4조(자격증박탈처분의 신청) ①교원의 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대학이 소재한 시·도의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	제4조(자격증취소처분의 신청) ①----- -----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에 따른 ----- ----- 취 소처분----- -----.
제5조(자격증박탈처분의 통지)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	제5조(자격증취소처분의 통지) ----- ----- ----- 취소처분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502